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치매관리법」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치매관리법」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안 별표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치매관리법」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5호 중 “사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치매관리법」
<u><신설></u>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u>부칙</u>
	<u>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u> <u>4월 23일부터 시행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014